

(붙임 2)

수 시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임직원의 징계 및 문책을 요구받음

2. 공시내용

○ 대 상 : 5명

○ 경 위 : 가계자금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

○ 주요내용 : 정직 3월 2명, 정직 1월 해당 1명, 견책 1명, 견책 해당 1명

○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사항 없음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징계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2025년 7월 11일

청산농업협동조합장(직인)

경영공시책임자	직 위	성 명	연락처	이메일
	전 무	고영광	061-552-9388	nh647038-1@nonghyup.com